|  |  |  |
| --- | --- | --- |
| **지분장려 및 출자전환의 개인소득세 징수관리 관련 문제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공고**  국가세무총국공고 2015년 제80호  <국가자주혁신시범구의 조세시범정책을 전국에서 확대실시할 것에 관한 재정부·국가세무총국의 통지>(재세[2015]116호)의 규정을 관철 및 실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분장려 및 출자전환의 개인소득세 징수관리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지분장려 관련  (1) 지분장려의 과세가격은 지분 취득 시점의 공정시장가액을 참조하여 확정하며 구체적인 확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상장기업 주식의 공정시장가액은 주식 취득일 당일의 마감가에 따라 확정한다. 주식 취득일이 비(非)거래일인 경우 직전 거래일의 마감가에 따라 확정한다.  ② 비(非)상장기업 지분의 공정시장가액은 순자산법, 유추법 및 기타 합리적인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확정한다.  (2) 지분장려의 개인소득세 금액 산정 시 규정월수는 당해 직원이 본 기업에서 실제로 근무한 월수에 따라 확정한다. 직원이 기업에서의 근무 월수가 12개월 이상인 경우 12개월로 간주하여 계산한다.  2. 출자전환 관련  (1) 비(非)상장 및 전국 중소기업 지분거래 시스템에 등록하지 아니한 중소형 기술기업이 미배당이익, 잉여공적금, 자본공적금을 개인 주주의 출자로 전환하고 출자전환이 재세[2015]116호 문건의 관련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 납세자는 개인소득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다. 비(非)상장 및 전국 중소기업 지분거래 시스템에 등록하지 아니한 기타 기업이 미배당이익, 잉여공적금, 자본공적금을 개인 주주의 출자로 전환하는 경우 적시에 개인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하여야 한다.  (2) 상장기업 또는 전국 중소기업 지분거래 시스템에 등록한 기업이 미배당이익, 잉여공적금, 자본공적금을 개인 주주의 출자로 전환(주식발행초과금으로 형성된 자본공적금의 출자전환은 제외)하는 경우 현행 주식배당금 차별화 정책에 따라 집행한다.  3. 비안(備案) 관리  (1) 기업으로부터 지분장려를 지급받은 기술인력 및 기업의 출자전환에 참여하는 주주가 개인소득세를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세금분할납부계획을 스스로 제정하여야 하며 기업은 지분장려, 출자전환 발생월 익월의 15일까지 관할 세무기관에서 분할납부 비안(備案) 수속을 이행하여야 한다.  지분장려의 개인소득세 분할납부 수속 이행 시 기업은 첨단기술기업인정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개인소득세 분할납부 비안(備案)표(지분장려)>, 관련 기술인력의 기술활동 참여경력 증명서류, 기업의 지분장려계획, 지분가격 또는 주식가격 증명서류, 기업의 기술성과 전환 설명자료, 가장 최근 재무제표를 관할 세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출자전환의 개인소득세 분할납부 수속 이행 시 기업은 첨단기술기업인정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개인소득세 분할납부 비안(備案)표(출자전환)>, 직전연도 및 출자전환월의 기업 재무제표, 출자전환 상황 설명서 등 서류를 관할 세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첨단기술기술인정서의 원본과 주주총회의결서 또는 이사회의결서의 원본은 관할 세무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를 실시한 후 기업에게 반환하며 복사본과 기타 관련 자료는 세무기관이 보관한다.  (2) 개인소득세 분할납부 기간에 납세자가 기존 세금분할납부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세금분할납부계획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하며 기업은 관할 세무기관에 <개인소득세 분할납부 비안(備案)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4. 원천징수납부 관련  (1) 기업은 <개인소득세 원천징수납부 보고표> 작성 시 납세자가 지급받은 지분장려 또는 출자전환 상황을 단독 작성하여야 하며 '비고'란에 '지분장려' 또는 '출자전환'을 기재하여야 한다.  (2) 개인소득세 분할납부 기간에 납세자가 배당금을 지급받거나 지분을 매각하는 경우 기업은 지분장려 또는 출자전환의 개인소득세 미완납분을 적시에 원천징수납부하여야 하며 익월 15일까지 관할 세무기관에서 납세신고 수속을 이행하여야 한다.  이 공고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위와 같이 특별히 공고한다.  첨부: 1. <개인소득세 분할납부 비안(備案)표(지분장려)> 및 작성요령 (생략)  　　　 2. <개인소득세 분할납부 비안(備案)표(출자전환)> 및 작성요령 (생략)    국가세무총국  2015년 11월 16일 |  | **国家税务总局**  **关于股权奖励和转增股本个人所得税征管问题的公告**  国家税务总局公告2015年第80号  　　为贯彻落实《财政部、国家税务总局关于将国家自主创新示范区有关税收试点政策推广到全国范围实施的通知》（财税〔2015〕116号）规定，现就股权奖励和转增股本个人所得税征管有关问题公告如下：  　 一、关于股权奖励  　　（一）股权奖励的计税价格参照获得股权时的公平市场价格确定，具体按以下方法确定：  　　1.上市公司股票的公平市场价格，按照取得股票当日的收盘价确定。取得股票当日为非交易时间的，按照上一个交易日收盘价确定。  　　2.非上市公司股权的公平市场价格，依次按照净资产法、类比法和其他合理方法确定。  　　（二）计算股权奖励应纳税额时，规定月份数按员工在企业的实际工作月份数确定。员工在企业工作月份数超过12个月的，按12个月计算。  　　二、关于转增股本  　　（一）非上市及未在全国中小企业股份转让系统挂牌的中小高新技术企业以未分配利润、盈余公积、资本公积向个人股东转增股本，并符合财税〔2015〕116号文件有关规定的，纳税人可分期缴纳个人所得税；非上市及未在全国中小企业股份转让系统挂牌的其他企业转增股本，应及时代扣代缴个人所得税。  　　（二）上市公司或在全国中小企业股份转让系统挂牌的企业转增股本（不含以股票发行溢价形成的资本公积转增股本），按现行有关股息红利差别化政策执行。  　　三、关于备案办理  　　（一）获得股权奖励的企业技术人员、企业转增股本涉及的股东需要分期缴纳个人所得税的，应自行制定分期缴税计划，由企业于发生股权奖励、转增股本的次月15日内，向主管税务机关办理分期缴税备案手续。  　　办理股权奖励分期缴税，企业应向主管税务机关报送高新技术企业认定证书、股东大会或董事会决议、《个人所得税分期缴纳备案表（股权奖励）》、相关技术人员参与技术活动的说明材料、企业股权奖励计划、能够证明股权或股票价格的有关材料、企业转化科技成果的说明、最近一期企业财务报表等。  　　办理转增股本分期缴税，企业应向主管税务机关报送高新技术企业认定证书、股东大会或董事会决议、《个人所得税分期缴纳备案表（转增股本）》、上年度及转增股本当月企业财务报表、转增股本有关情况说明等。  　　高新技术企业认定证书、股东大会或董事会决议的原件，主管税务机关进行形式审核后退还企业，复印件及其他有关资料税务机关留存。  　　（二）纳税人分期缴税期间需要变更原分期缴税计划的，应重新制定分期缴税计划，由企业向主管税务机关重新报送《个人所得税分期缴纳备案表》。  　　四、关于代扣代缴  　　（一）企业在填写《扣缴个人所得税报告表》时，应将纳税人取得股权奖励或转增股本情况单独填列，并在“备注”栏中注明“股权奖励”或“转增股本”字样。  　　（二）纳税人在分期缴税期间取得分红或转让股权的，企业应及时代扣股权奖励或转增股本尚未缴清的个人所得税，并于次月15日内向主管税务机关申报纳税。  　　本公告自2016年1月1日起施行。  　　特此公告。  　　附件：1. 《个人所得税分期缴纳备案表（股权奖励）》及填报说明（略）  　　　　　2. 《个人所得税分期缴纳备案表（转增股本）》及填报说明（略）  国家税务总局  2015年11月16日 |